# Ⅲ 특고노동자의 권리 - 노동3권과 건강권

## 특고노동자의 노동3권

-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특고노동자는 노동3권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
- 노동3권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, 사업주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 단체교섭권,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
- 일반적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는 달리 배송기사, 택배기사, 배달라이더, 대리운전기사 등 다수 직종의 특고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있어요.

## 특고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

-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특고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해요.

| 교육과정 | 교육시간 | 대상 |
|---|---|---|
|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| 2시간 | 학습지 방문강사, 골프장캐디, 택배기사, 대리운전기사 등 (2023.06 현재 9개 업종) |
| 특별교육 | 16시간 | 고압실 내 작업,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,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 사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위·험유해업종 종사자 |

-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특고노동자 (택배기사, 배달종사자, 대리운전기사, 화물차주 등)를 고용한 사업주는 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특고노동자 건강진단 비용의 80%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